1998. 2. 26 제정
2023. 11.30 개정

이사회 규정

삼 성 전 자 주 식 회 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 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③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제3장 회 의

제7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가. 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사외이사 제외)를 겸하고 있는 경우 회사와 그 다른 회사와의 거래

나. 이사가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혈족 포함)과 합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와 그 다른 회사와의 거래

다. 이사, 그 배우자, 이사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다른 단체, 법인의 이사장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와 그 다른 단체등과의 거래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기타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 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법규·정관상 의무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7)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8) 사후설립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주식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주주총회 의장 선임 (이사회가 주총 의장을 선임하여야 할 경우임)
16) 주주총회 소집권자의 선임 (이사회가 주총 의장 선임하여야 할 경우임)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 등에 관한 사항

【법규·정관상 의무사항】

1) 삭제
2) 삭제

【공시규정상 추가사항】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표준이사회 규정상 추가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삭제
3) 삭제
4) 경영계획 및 분기, 반기보고서 승인
5)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3. 재무 등에 관한 사항

【법규·정관상 의무사항】

1) 삭제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발행의 결정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4)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5) 내부거래 등의 승인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나.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동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사 제외)

【기타 주요 재무사항】

1) 삭제
2) 자기자본 2.5%이상 상당 타법인 출자, 처분
3) 자기자본 2.5%이상 상당 해외직접투자
4) 삭제
5) 자산재평가 실시
6) 주권 등 액면분할, 병합
7)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
8) 건별 자기자본 2.5%이상 상당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담보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채무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

9) 자기자본 5%이상 상당 금액 차입계약 체결
10) 해외증권시장 주권 상장
11) 투신사 자사주펀드 가입, 중도해지중 중요한 사항
12) 유상증자시 실권주식 처리
13) 자기자본 0.5%이상 상당 금액 가지급 또는 대여
14)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부, 후원, 협찬

4.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법규·정관상 의무사항】

1) 이사의 경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 이사회 의장의 선임

3)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 대표의 결정
4)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5)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기타
1) 이사회 운영 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폐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경영위원회
나. 감사위원회
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라.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내에 이사회의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단, 감사위원회는 제외)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⑤ 위원회에 대해서 제8조 (이사회 소집), 제9조 (결의방법) 및 제15조 (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제③항에 의거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년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2) 주요 경영전략
3) 사업계획·사업구조 조정 추진
4) 해외 지점·법인 설치, 이전 및 철수
5)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
6) 국내외 주요 자회사 매입 또는 매각
(자기자본 0.1% 이상인 경우에 한함)
7) 기타 주요 경영현황
8) 지점,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폐지
9)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10) 최근사업년도 생산액의 5%이상 생산중단, 폐업
11) 자기자본 0.5%이상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 제휴
12) 자기자본 0.5%이상 신물질, 신기술관련 특허권 취득, 양수, 양도계약
13)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제품수거, 파기
14)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단일계약 체결
15)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단일판매 대행 또는 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
16) 조직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17)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의 기본원칙의 결정 및 변경
18)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
19)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20)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의 제정
21) 삭제

2. 재무 등에 관한 사항

1) 자기자본 0.1% 이상 2.5% 미만 상당 타법인 출자, 처분
2) 자기자본 0.1% 이상 2.5% 미만 상당 해외 직접투자
3) 자기자본 0.1% 이상 2.5% 미만 상당 신규 담보제공 또는 신규 채무보증 (기간 연장은 제외함)
   - 담보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채무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
4) 자기자본 0.1% 이상 5% 미만 상당 신규 차입계약 체결 (기간연장은 제외함)
5) 내부거래의 승인
내부거래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특수관계인을 상대

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30억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금액 미만 상당의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등) 또는 자산(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기존 계약을 중대한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사채발행
7) 자기자본 0.1%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단,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함
8) 주요 시설투자 등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제12조의2 (감사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의3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승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③ 삭제

제16조 (간사)

① 이사회 간사를 두고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제17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부보)

본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원 및 회사의 집행간부를 포함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